

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	2011. 1.
개 정	2011. 11.
개 정	2014. 1.
개 정	2019. 7.
개 정	2020. 12.
개 정	2021. 2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와 학칙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칭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심의위원회는 당해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, 그리고 관련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하는 10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1.11.30)

1. 교직원 4인
2. 학생 3인
3. 관련전문가 2인
4. 학부모 1인

②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심의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.

제3조 (위원위촉)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0.12.22.)(개정 2021.02.16)

1. 교직원 위원 중 교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와, 직원은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
2.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장이거나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
3. 학부모 위원은 총동문회 등의 추천을 거친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인사
4. 관련전문가 위원은 총동문회 등의 추천을 거쳐 학생복지처장과 총학생회장이 협의한 인사

제4조 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학생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. 또한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1.11.30)

제5조 (위원 자격상실) ①교직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직 및 퇴직
2. 징계에 의한 직무해제
3. 사임서를 제출한 때
4. 위원이 그 직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

②학생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학 및 졸업
2. 학칙 및 총학생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징계처분
3. 3개월 이상의 교환 학생으로 파견
4.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

제6조 (위원장)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제7조 (사무관장 등)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하며,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1.02.16)

②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회의) ①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일시, 장소 그리고 안건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07.03.)

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(개정 2021.02.16)

제9조 (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21.02.16)

- ①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
- ②그 밖의 등록금 산정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③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④고등교육법 제11조제4항 관련 등록금 면제·감액에 관한 사항

제10조 (자료요청 및 협조) 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대학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 (비밀유지)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 (회의록) ①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, 보존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11.30)

②회의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개정 2011.11.30.)

③회의록은 참석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3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12.22.)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14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예산편성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